



영풍·MBK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대부분 인용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번 달 정기주총에서 또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 불가피 / 절차의 적법성에 치중된 분쟁 아쉬워

▶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임시주주총회 주요 안건 표결 결과 및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주요 안건	표결 결과	법원 판결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	원안대로 승인	효력 유지
이사 수 상한을 19인으로 설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 ^주	원안대로 승인	효력 정지
고려아연 추천 이사 후보 7인 선임 안건	원안대로 승인	이사 직무집행정지
영풍 추천 이사 후보 14인 선임 안건	부결	-

주: 고려아연 측이 추진

지난 7일, 법원은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한편 당해 주총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이사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하였다. 지난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총 직후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려아연 측 인사로 구성되었으나, 급변 판결로 인해 다음 주 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이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1월 23일) 결과

임시주주총회 당일,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MBK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이에 고려아연 측이 당해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을 19인으로 설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통과되었고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7인이 모두 선임되었다.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 인용 (3월 7일)

지난 7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의 효력은 인정되었으나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안건의 결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영풍, 고려아연 주식 전량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 (3월 7일)

(주)영풍은 법원 판결이 있던 날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 25.42%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 Limited)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주)영풍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제 저촉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었다.

Comment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 보니 표 대결 승리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 절차적 적법성에 고착된 다툼이 이어지는 것 같아 일견 아쉬움이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 동시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주총 전날 주식을 매입한 뒤 주총 당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이사회 구성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이런 식의 분쟁보다는 양측이 추천한 각 이사가 고려아연을 경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독립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한 논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1월 23일) 결과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목)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오전 9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주주 명부 확인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5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30일에 영풍·MBK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2025년 1월 21일 인용됨에 따라* 임시주총 개최 전까지는 영풍·MBK 측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들의 선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 당일,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MBK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이에 고려아연 측이 당해 임시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는 승기를 잡았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이 금지된 것임에 유예)

임시주총 전날인 22일에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이하 ‘SMC’, 호주에 본점 소재)은 (주)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주)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었다. 상법 제369조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주)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의 일격으로 (주)영풍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5.42%는 당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상실했다. 우호 지분을 포함한 고려아연 측 지분율이 약 34.35%, 영풍·MBK 측 연합 지분율이 약 40.97%로 영풍·MBK 측의 연합 지분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고려아연이 시도했던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영풍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였기에,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진하는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려아연 측 히든카드의 등장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을 19인으로 설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등이 통과되었고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7인이 모두 선임되었다.

그러나 영풍·MBK 측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영풍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 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들어 추가 법적조치를 예고하였고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연이어 2월 3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이사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였다.

[표1]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2025년 1월 23일 개최) 회의 목적사항별 표결 결과 및 결의에 대한 법원 판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안건명, 안건 내용	표결 결과	법원 판결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1}	원안대로 승인	효력 유지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주2}	원안대로 승인	효력 정지
	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3}	부결	-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효력 정지
	제1-5호 의안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부결	-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4}	제1-3호 의안 부결에 따라 상정 → 원안대로 승인	효력 정지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효력 정지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효력 정지
제2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인 선임의 건 ^{주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1.자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상정하지 않음	
	제2-1호~ 제2-21호 의안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21인 각 후보에 대한 선임의 건으로, 세부 내용 생략 ^{주6}		-
제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주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1.자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상정하지 않음	
	제3-1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		-
		제3-1-1호 의안	이사 7인 선임의 건 ^{주8}		-
		제3-1-2호 의안	이사 14인 선임의 건 ^{주8}		-
	제3-2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인 선임의 건 ^{주9}		-
	제3-2-1호~ 제3-2-21호 의안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21인 각 후보에 대한 선임의 건으로, 세부 내용 생략 ^{주10}		-
	제3-3호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4인 선임의 건 ^{주11}		-
		제3-3-1호~ 제3-3-21호 의안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21인 각 후보에 대한 선임의 건으로, 세부 내용 생략 ^{주12}		-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주13}	제1-2호 의안은 가결되고 제1-1호 의안 역시 가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1.자 2024카합21996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본 제4호 의안이 상정됨	
	제4-1호~ 제4-21호 의안 ^{주14}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21인 각 후보에 대한 선임의 건으로, 세부 내용 생략 ^{주15}	고려아연 추천 후보 7인 선임 안건 원안대로 승인, 영풍 추천 후보 14인 선임 안건 부결	이사 직무집행정지
제5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주16}	제1-2호 의안 가결에 따라 자동 폐기	
	제5-1호~ 제5-21호 의안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21인 각 후보에 대한 선임의 건으로, 세부 내용 생략 ^{주17}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주1: 유미개발(주)이 주주제안. 유미개발(주)은 최창철 고려아연 명예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

주2: '이사는 3인 이상 19인 이하로 한다는 문구를 정관 조항에 추가

주3: (주)영풍이 주주제안

주4: 제1-6호 의안은 제1-3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1-3호 의안 가결 시 자동 폐기됨

주5: 제2호 의안은 제1-1호 의안 및 제1-2호 의안이 모두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주6: 14인은 (주)영풍이 주주제안한 후보

주7: 제3호 의안은 제1-1호 의안이 가결되고, 제1-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주8: 제3-1-1호 및 제3-1-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

주9: 제3-2호 의안은 제3-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1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주10: 14인은 (주)영풍이 주주제안한 후보

주11: 제3-3호 의안은 제3-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제3-1-2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됨

주12: 14인은 (주)영풍이 주주제안한 후보

주13: 제4호 의안은 제1-1호 의안이 부결되고, 제1-2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주14: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일괄 상정 및 일괄 표결하고, 만약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선임 가능한 이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득표 순으로 이사 수 상한 이내에서 선임함

주15: 14인은 (주)영풍이 주주제안한 후보

주16: 제5호 의안은 제1-1호 의안과 제1-2호 의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자료: 고려아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현행 상법상 상호주 출자 제한 관련 조항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2025년 1월 23일 개최) 법적 쟁점

고려아연 측 주장

- 상법 제369조제3항은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 1월 22일 (주)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주)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됨
- 따라서 (주)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영풍·MBK 측 주장

-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 영풍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임
- 계열회사 SMC가 고려아연 일가와 (고려아연 주주 중 하나인) 영풍정밀이 보유했던 (주)영풍 지분 10.33%를 장외에서 575억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

자료: 언론 보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 인용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주총회로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난 3월 7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한편 당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고려아연 측 이사 7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하였다. 이로써 지난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의 효력은 인정되었으나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안건의 결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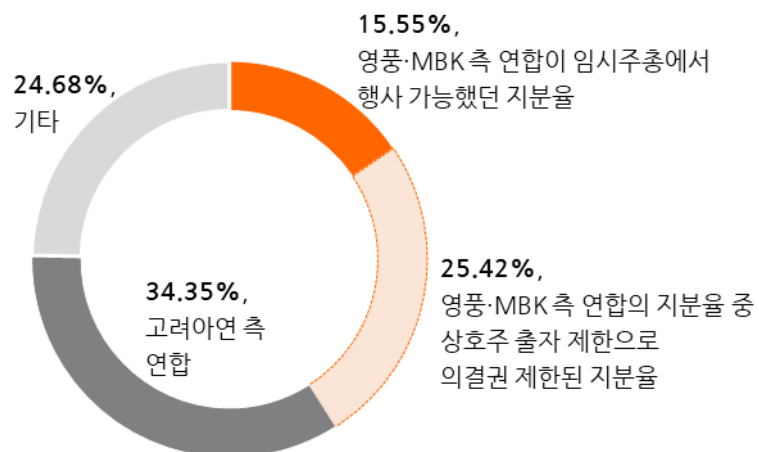
한편, 영풍·MBK 측은 지분 40.97%에 대해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려아연은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 하여금 (주)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하게 하고 ‘고려아연→SMC→(주)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상법상 상호주 출자 제한 규정을 근거로 (주)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영풍·MBK 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당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영풍·MBK 측이 패배의 쓴 맛을 보아야 했다.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추진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의 안건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종전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1 구성에서 18:1 구성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7일 법원 결정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대부분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번 달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격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4년 정기주총에서 선임되었던 김우주 기타비상무이사 최근 사임 의사 밝힘)

한편, 영풍·MBK 측은 지난 달 주주제안을 통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임시의장 선임, 이사 선임, 자기주식 소각 등의 안건을 상정하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그림1]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율



자료: 언론 보도, 고려아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영풍, 고려아연 주식 전량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 (3월 7일)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소재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영풍의 지분 10.33%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임시주총 전날 SMC는 (주)영풍의 지분 10.33%를 매수하여 ‘고려아연→SMC→(주)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신규로 형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상법상 상호주 출자 제한에 저촉되게 되어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3월 7일에 결정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되었던 안건 대부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고 (주)영풍의 의결권도 부활하게 되었다.

(주)영풍은 법원 판결이 있던 날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 25.42%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 Limited)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주)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란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주)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에 대해 “영풍의 총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총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조업 정지와 사업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과 사업 정상화의 핵심 재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주)영풍은 “상법 제374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영업 구조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풍은 기존 제련사업 등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려아연 주식은 영업이 아닌 관계기업 투자 지분이기 때문에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영풍은 또한 “계열회사 간 주식 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영풍은 금번 현물출자를 통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제 저촉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었다.

Comment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 보니 표 대결 승리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 절차적 적법성에 고착된 다툼이 이어지는 것 같아 일견 아쉬움이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 동시 상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주총 전날 주식을 매입한 뒤 주총 당일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이사회 구성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이런 식의 분쟁보다는 양측이 추천한 각 이사가 고려아연을 경영하기에 적합한 전문성·독립성·윤리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한 논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별첨]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Timeline

[표4]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Timeline

연, 월, 일 등	사건
1949	故장병화-故최기호 창업주 영풍기업사 공동창업
1974	故장병화-故최기호 창업주 고려아연 공동설립
1990년대	2세 경영 시작
2022.08	고려아연, Hanwha H2 Energy USA Corp.에 유상증자 ^{주1}
2022.12	고려아연 3세 경영 개막: 최윤범 전 부회장 → 회장 취임
2023.08	고려아연, HMG Global LLC(현대차그룹 해외 계열회사)에 유상증자 ^{주1}
2024.03	고려아연과 영풍, 배당 관련 이견, 정관 변경의 건 ^{주2} 등으로 주주총회 표 대결
2024.04	고려아연, 영풍과 원료 공동구매 및 영업 종료 선언
2024.06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고려아연이 경영권 확보
2024.07	고려아연, 강남 영풍빌딩에서 종로 그랑서울로 본사 이전
2024.09.13	영풍-MBK,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주당 66만원) 개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관련 의혹 및 문제점 ^{주3} 지적
2024.09.19	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2024.09.26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 가격 상향 (주당 75만원)
2024.10.02	· 고려아연, 자기주식 매입 등 대항 공개매수 발표 (주당 83만원) · 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에 찬성 결의한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 · 법원, 영풍이 9월 19일에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4.10.04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 가격 상향 (주당 83만원)
2024.10.11	고려아연, 자기주식 등 공개매수 가격 상향 (주당 89만원)
2024.10.14	영풍-MBK, 공개매수 종료
2024.10.21	법원, 영풍이 10월 2일에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4.10.23	고려아연, 자기주식 등 공개매수 종료
2024.10.28	영풍-MBK,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요 안건: 신규이사 14인 선임,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2024.10.30	고려아연, 2조 5천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
2024.11.13	고려아연,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2024.12.19	영풍-MBK, 고려아연 주식 1.13% 추가 취득
2024.12.23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등 임시주총 안건 추가 상정 ^{주4}
2024.12.30	영풍, 법원에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025.01.21	법원, 영풍이 2024년 12월 30일에 제기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5.01.22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 취득
2025.01.23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개최, 고려아연 측 추진 안건 가결
2025.03.07	· 법원, 영풍-MBK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일부) 인용 · ㈜영풍,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전량을 현금출자하여 신규 유한회사 설립

주1: 한화그룹-현대차그룹-LG화학은 각각 고려아연 지분을 7.80%, 5.05%, 1.89%씩 보유한 고려아연의 우군으로 분류됨

주2: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주3: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음 /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Pedalpoint Holdings, LLC)를 통해 완전자본감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Igneo Holdings, LLC)를 2022년에 총 5,800억원을 들여 인수. 이 때 가치평가 절차나 근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2024년 4월 1일 종속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Kataman Metals, LLC)에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승인과 내부품의만 거쳐 2,69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 결정

주4: 앞서 12월 3일에 제출한 주주총회소집결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12월 23일에 정정공시를 제출하면서 안건을 추가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언론 보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